

서울特別市永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3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8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1일

〈제13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財務局長 金興權)

가. 개정이유

영등포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 대책 및 주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부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분입물품관리관과 분입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제를 분입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 함. (안 제2조 제2항)
- 2)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함. (안 제9조 제1항)
- 3)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재 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함. (안 제10조의 2)
- 4)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 (안 제16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영등포구 소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심 사 결 과 원안대로 가결

(재적위원 11명

출 석 10명

찬 성 10명

반 대 없음)

서울特別市永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92
----------	----

제출년월일 : 1992년 7월 31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소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 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부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 체제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 함.

(안 제2조 제2항)

나.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함.

(안 제9조 제1항)

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재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함.

(안 제10조의 2)

라.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

(안 제1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제130조 제1항

나. 예 산 :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이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한다로 하며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1항중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를 “소모품에”로 한다.

제2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제3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으로 한다.

제10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에 다음을 신설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및 활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 (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제3항의 각호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舊條文對備表

현행	개정안
<p>제2조(관리책임)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②.....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p> <p>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p> <p>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9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물품에 한한다.</p> <p>②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p>	<p>제9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 소모품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p>

현행	개정안
<p>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 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p> <p>③분입물품출납원이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p> <p>.....</p> <p>.....</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입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p> <p>.....</p> <p>.....</p> <p>.....</p>
<p>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p> <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u>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u>의 물품으로 한다.</p>	<p>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p> <p>.....</p> <p>.....정수물품.....</p> <p>.....</p>
<p>제15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②물품관리관은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5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②물품관리관은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u>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및 활용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u></p> <p>1~8 (생략)</p> <p>②~③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16조 (불용품의 매각)</p> <p>①~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다만,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⑧(생략)</p>	<p>제16조 (불용품의 매각)</p> <p>①~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다만, 제3항의 각호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⑧(생략)</p>
<p>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p> <p>② 분입물품출납원은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p> <p>② 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